

## 겸임교원 임용규정

제정 : 1997.03.01  
개정 : 1998.05.01  
개정 : 1999.10.18  
개정 : 2008.12.17  
개정 : 2011.06.30  
개정 : 2011.11.22  
개정 : 2012.07.22  
개정 : 2014.11.01  
개정 : 2021.03.01  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대학교 설립운영규정」에 근거하여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칭한다.) 겸임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8. 05. 01., 1999. 10. 18., 2008. 12. 17., 2021. 12. 01.>

제2조(겸임교원의 정의) “겸임교원” 이라 함은 국가기관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직에 근무하는 자중 겸임교원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해당전문분야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본 대학교에서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조(임용구분)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준용한다. <개정 2012. 07. 22., 2014. 11. 01.>

제4조(겸임교수 자격) ① 겸임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.
2. 학생 지도 및 교수 능력이 있는 자
3.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있는 자.
4. 대학·대학교 등 졸업한 전공 분야가 강의를 담당할 교과목과 유사한 자.
5. 임용기간동안 계속하여 주당 3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.

②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취업 지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전항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임용권자) ① 겸임교원의 임용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<삭제 2014. 11. 01.>

제6조(임용기간)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.  
② 전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겸임교원은 강의충실도, 학생지도 등을 고려하여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계약할 수 있다. 별도의 계약 행위가 없으면 해임 발령 없이 당연퇴직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7조(복무) 겸임교원은 본 대학교에 복무하는 동안 총장의 지휘, 감독을 받아야 한다.  
<개정 2014. 11. 01.>

제8조(보수) ① 겸임교원의 보수지급은 주당 강의시수에 의한 강사료를 산정하여 매월 1회 지급한다. <개정 2011. 06. 30., 2021. 12. 01.>  
② 제1항의 강사료는 본 대학교 외래강사에 관한 보수규정을 적용한다. 겸임교원은 주당 3시간을 기본강의시수로 하며, 이를 초과하는 강의에 대하여 추가 강사료를 지급한다.  
③ <삭제 2011. 06. 30.>

제9조(겸임교원의 정원) 겸임교원은 「대학교설립운영 규정」 제6조에 의하여 학과마다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0조(신분보장) ① 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신분에 준한다.  
② 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「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」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과의 폐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1조(휴직, 징계) 겸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으며, 징계에 관한 사항은 「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」, 「교원인사 규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2조(현직보유의 의무) ① 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임용 당시의 업체에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  
② 겸임교원이 현직에서 해직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여 겸임교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그 학기의 종료일까지 본 대학교 강사에 해당하는 대우 및 처우를 받아 강의를 계속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3. 01.>

제13조(임용구비서류) 겸임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06. 30., 2021. 12. 01.>

1. 겸임교원 추천서, 겸임교원 지원서 <개정 2014. 11. 01.>
2. 졸업 및 성적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
3. 경력증명서
4. 사실근무확인서
5. 출강동의서
6. 주민등록 등본
7. 4대보험(택1)확인서

제14조(퇴직금) 겸임교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「교원인사규정」을 적용한다. <개정 1998. 05. 01., 1999. 10. 18., 2008. 12. 17., 2021. 12. 01.>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명변경) 본 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